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9.
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0월 24일, 박홍배의원 등 15인

나. 회 부 일 자 : 2024년 10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0회 국회(임사회)

제2차 전체회의(2025. 1. 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2025. 9.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
안반영 폐기)

제2차 전체회의(2025. 9.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홍배의원)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단순히 현재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요율을 산정하고 있어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 발생 및 이에 따른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손해율이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환경책임보험과 유사하게 정책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나 농업재해보험은 소관 부처에서 보험 사업을 관장토록 해서 각 보험의 특성에 맞게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이에 미래 대형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 등 합리적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환경책임보험에 재무제표 등 제출, 공시 등 「보험업법」상의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환경책임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료율 산출기관인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을 산정하고 있으나, 손해율만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하여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따른 손해율이 미반영되는 등의 한계가 있어, 개정안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나 농어업재해보험과 같이 환경책임보험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게 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율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되 환경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하여 환경책임보험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고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① 보험상품 요율은 「보험업법」 제129조 등에 따라 과거 경험통계 또는 보험료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참조순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과 같이 별도 기준에 따르는 경우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 부담 전가 및 국가-보험계약자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② 「보험업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보험시장 건전성 및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배제됨이 없이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③ 예산지원이 전제되는 다른 정책성보험과 다르므로 타 법률과의 형평성, 규제목적, 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에 대하여 환경부는 ① 환경오염사고의 다양한 리스크 유형 반영 및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해서는 실적 통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리스

크 평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율체계 개선이 필요하고, ②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제35조)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제18조) 등도 「보험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공백 없이 보험을 운영 중이며, ③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등 유사 정책성보험과 형평성, 규제 목적, 법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타 정책성보험과 같이 환경부장관의 관장을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따라서, 동 개정안 심사시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면서 보험료율 산정에 보다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완(「보험업법」 준용 규정 보완 등) 조치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생략

6.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사항

없음